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777

발의연월일: 2023. 3. 21.

발 의 자:서동용・김정호・이병훈

서삼석 • 유기홍 • 김철민

이동주 • 박광온 • 민형배

신정훈 · 임오경 · 김용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이와 별개로 행정소송의 제기 또한 가능함.

이처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장기화되고, 전학 · 퇴학 등의 조치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해학생과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.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.

이에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 감이 변호사 선임,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3(행정심판 등에서의 피해학생 지원) 교육감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변호사선임,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7조의3(행정심판 등에서의 피
	해학생 지원) 교육감은 가해학
	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
	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
	여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
	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
	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
	기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법
	률적 조력을 위하여 변호사 선
	임,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지원
	<u>을 할 수 있다.</u>